

보도시점 2024. 12. 13.(금) 06:00 < 12.13.(금) 석간 > 배포 2024. 12. 12.(목)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만든다

- 국표원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주기('25~'27)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기술규제 영향평가, 사전검토)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이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사후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1·2주기 실효성검토)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제(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안)」(인증 등 정비방안) 등 주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회의에서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김태완 (043-870-5550)
	기술규제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홍진기 (043-870-55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 회의 개요

* (기술규제위원회) 기술규제 분야 안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회의명)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

○ (일시/장소) '24.12.13.(금) 10:30~12:00/ 엘타워(서울 서초구)

○ (참석자) 기술규제위원회 민간위원장·위원, 국표원 등

○ 주요안건

1)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 방향(안)

2)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3) '25년 기술규제위원회 운영계획(안)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제도(사전적 관리)

-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술기준, 인증 등 기술 규제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술규제 영향평가 도입('13.1.)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개정 법령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규제심사 제도의 일부로써 운영 중
- 정부 법령(고시 포함) 중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
 - 국가표준, 안전기준 및 적합성평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표원에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키로 결정
 -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총리 훈령, '12.12.)을 통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산업부에 설치
 - **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② 3년 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사후적 관리)

-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 시험, 검사 제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적합성평가 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
 - *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4.8월)
 - ** (법적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
 - 제도 소관부처의 자체검토서를 기반으로 국표원이 사전검토하여 제도별 존속·개선·통합·폐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도별 개선방안(개선·통합·폐지)을 이행